C - 70 - 2012

(7) 강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자 근처까지 연장하여 강제 급·배기를 실 시하여야 한다. 배기장치에는 고성능 필터 등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7.2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협력업체

- (1) 화기작업은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. 위험성 평가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(가)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수행 여부
 - 작업 전 및 작업 중 산소농도와 인화성 물질 및 독성 물질의 농도 측정
 - 환기의 필요성 및 필요한 환기량 파악
 - (나) 화기작업 대상 기계기구의 상태
 - (다) 인화성 물질 및 독성 물질의 발생 여부
 - 작업 중 인화성 물질 및 독성 물질의 발생 가능성
 - 인화성 물질 및 독성 물질의 처리방법
 - 필요한 개인보호구의 종류
 - (라) 작업구역에서 취급하는 인화성 물질이 잔류할 가능성
 - (마) 출입제한구역 설정 여부
 - (바) 소화장비 비치 및 사용방법
 - (사) 작업 중 관리감독자 감독 필요 여부
 - (아) 화기작업 시 사고 사례와 문제점 등
- (2) 화기작업은 인화성 물질이 없는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한다. 만약 화기작업이 인화성물질 인근에서 수행된다면 화기작업으로부터 10m이상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인화성물질을 옮겨야 한다. 인화성물질을 옮길 수 없다면 방화덮개나 용접방화포와 같은 방화커버로 보호하여야 한다.
- (3) 화기작업 지역에서 작업하는 다른 공종의 근로자에게도 우레탄 등 단열재의 화재 특성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결과를 포함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